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 확대〉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6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2.
3. 회부연월일 :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수입금액,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

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 확대

현행	개정안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u>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u> <u>1. 상시 근로자 수</u>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u>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u> <u>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u>

2. 매출액

3. 자산총액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나.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다.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2.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나.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다.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매출액·수입금액에 관한 정보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과세정보 등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자료의 요청범위에 대해서는 ① 상시 근로자 수, ② 매출액, ③ 자산총액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¹⁾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 관한 정보, 상시 근로자 수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보다 면밀히 파악·분석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장,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2차) 자료집, 국회의원 오세희·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2025.6.30.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디지털 기반 선제 대응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며,²⁾ 국세청과 협업하여 국세데이터 연계 및 다중·부업사업자 선별을 통해 정확한 순 자영업자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 대상 명확화 및 영세 자영업자 대상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³⁾

다만,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유사 취지 법률안⁴⁾과 함께 개정안을 논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표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의 사업자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책 설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과 함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구체적으로,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고 함. 그리고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 지원을,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상권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함.

3)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2025.12.17.) 자료 및 보도자료(“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 2025.12.17.) 참조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제2213501호)

문 의 처
02)6788-5465